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의 분장사무를 예술정책관 소관에서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으로 조정하는 한편,

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의 분장사무에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3. 3. 00. ~ 4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제40호까지”를 “제36호까지 및 제40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1조제3항제41호”를 “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4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문화정책과·국어정책과·전통문화과·국제문화과·예술정책과·공연전통예술과·시각예술디자인과·문화예술교육과·예술인지원팀·지역문화정책과·문화기반과·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, 문화정책과장·국제문화과장·예술정책과장·공연전통예술과장·문화예술교육과장·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”을 “문화정책과·국어정책과·전통문화과·국제문화과·예술정책과·공연전통예술과·시각예술디자인과·예술인지원팀·지역문화정책과·문화기반과·도서관정책기획단·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, 문화정책과장·국제문화과장·예술정책과장·공연전통예술과장·지역문화정책과장·도서관정책기획단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8항 및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6항(중전의 제17항)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문화예술정책실) ① ~ ③ (생략)	제8조(문화예술정책실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예술정책관은 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3항제25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	④ ----- 제36호까지 및 제40호-----
⑤ -----	⑤ -----
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	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41호-----
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 · 국어정책과 · 전통문화과 · 국제문화과 · 예술정책과 · 공연·전통예술과 · 시각예술디자인과 · 문화예술교육과 · 예술인지원팀 · 지역문화정책과 · 문화기반과 ·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, 문화정책과장 · 국제문화과장 · 예술정책과장 · 공연·전통예술과	⑥ ----- 문화정책과 · 국어정책과 · 전통문화과 · 국제문화과 · 예술정책과 · 공연·전통예술과 · 시각예술디자인과 · 예술인지원팀 · 지역문화정책과 · 문화기반과 · 도서관정책기획단 ·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, 문화정책과장 · 국제문화과장 · 예술정책과장 · 공연·전통예술과

장 · 문화예술교육과장 · 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,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,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예술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	· 지역문화정책과장 · 도서관정책기획단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-----
⑦ ~ ⑬ (생략)	⑦ ~ ⑬ (현행과 같음)
⑭ (생략)	⑭ (현행 제14항과 같음)
⑮ · ⑯ (생략)	⑭ · ⑮ (현행 제15항 및 제16항과 같음)
⑰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⑰ -----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1.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
⑰ (생략)	⑰ (현행 제18항과 같음)